

2022년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

(1회 실시 기준)

(2022. 1. 1현재)

번호	대상시설	소독횟수	대상별 기본료		대상별 추가료	
			기준단위	원/1회	추가단위	원/1회
1	공중위생관리법,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소 및 관광숙박업소(객실 수 20실 이상)	4월~9월까지 1회 이상 /1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 /2개월	20실 (500㎡)	207,000	추가객실 (25㎡)당	7,150
2	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(마.목 제외)에 따른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		300㎡	293,000	추가㎡당	170
3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(다.,라. 목 제외)에 따른 시내버스·농어촌버스·마을버스·시외버스(고속/직행/일반형)·전세버스·장의자동차		10대 (300㎡)	331,000	추가 1대 (30㎡)당	13,270
4	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		300㎡	291,000	추가㎡당	170
5	해운법에 따른 여객선			208,000		190
6	항만법에 따른 대합실(연면적 300㎡ 이상)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			233,000		200
7	철도사업법,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			208,000		190
8	철도사업법,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및 역무시설		2,000㎡	439,000	추가㎡당	120
9	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·전문점·백화점·쇼핑센터·복합쇼핑몰·그 밖의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			325,000		150
10	종합병원·병원·요양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		1,000㎡	325,000	추가㎡당	150
11	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(1회 급식인원 100명 이상)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마.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(연면적 300㎡ 이상)	4월~9월까지 1회 이상 /2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 /3개월	300㎡	293,000	추가㎡당	170
12	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2호 라.목에 따른 기숙사 화재예방, 소방시설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제8호 가.목에 따른 합숙소(50인 이상 수용)		300㎡	315,000	추가㎡당	170
13	공연법에 따른 공연장(객석 수 300석 이상)		500㎡	284,000	추가㎡당	160
14	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·공민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·대학·산업대학·교육대학·전문대학·원격대학·기술대학·각종학교		3,000㎡	542,000	추가㎡당	100
15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(연면적 1,000㎡ 이상)		1,000㎡	283,000	추가㎡당	140
16	사무실용 건축물·복합용도 건축물(연면적 2,000㎡ 이상)		2,000㎡	328,000	추가㎡당	90
17	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(50인 이상)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(50인 이상)		300㎡	315,000	추가㎡당	180
18	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2호(라.목 제외)에 따른 공동주택(300세대 이상)	4월~9월까지 1회 이상/3개월 10월~3월까지 1회 이상/6개월	300세대 (1세대 106㎡ 기준)	2,271,000	추가세대 (106㎡) 당	4,410
※	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1호 가.목에 따른 단독주택		1세대 (100㎡ 기준)	191,000	추가㎡당	150
※	건축법 시행령 [별표 1] 제3호 사.목에 따른 공중화장실		1개소(20㎡)	72,000	추가㎡당	750

- 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(계약예규 제577호, 2021.12.1)에 의거 비목별 산출됨.
(본 원가계산표에는 재료비, 노무비, 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이 포함되어 있음).
- 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기본 방제용역 원가이며 **코로나19 등 별도 방제용역 항목이 추가 될 경우** 가격이 변동될 수 있음.
- ※ 대상별 추가료는 기본료 기준단위를 초과할 경우 적용됨.
- ※ 원가계산표는 구충(위생해충), 구서, 살균소독 비용을 포함한 것임(수목병해충 방제 비용은 미포함).
- ※ 상기 원가계산표는 (사)한국방역협회에서 규정한 기준에 의거 원가계산 공인기관에서 산출한 것이며, 예정가격 작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서 실제 적용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- ※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호 : 4월~9월까지 주 3회 이상, 10월~3월까지 주 1회 이상 소독